

방사능방재법과 개인정보 보호

2021. 5.

형 상 철

목 차

- 1 개인정보 보호 원칙
- 2 방사능방재법상 승인신청서
- 3 교육기록 보존
- 4 결론

1. 개인정보 보호 원칙

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: 개인정보 보호 원칙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**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**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2. 방사능방재법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

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 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본사	명칭	
		대표자 성명	(생년월일:)
		주소	(전화번호:)
	사업소	명칭	
주소		(전화번호:)	

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◆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필요한 이유는?

2. 방사능방재법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

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4개월
신청인	본사	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		주소	전화번호
	사업소	명칭	
		주소	

- ◆ 원자력안전법상의 각종 허가 신청서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음

2. 방사능방재법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

원자력안전법 제14조 : 결격사유
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2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3.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- ◆ 신청인이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함

2. 방사능방재법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: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

제15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제3호의 사무에 한정한다)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4호...에 따른 인가·허가·지정·등록·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
2. 법 제14조...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

- ◆ 허가, 결격사유조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

2. 방사능방재법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

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의 관계

- ◆ 방사능방재법 :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규정등이나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함
 - ◆ 원자력사업자 :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들
 - ◆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단계에서 이미 결격 사유를 조회했음
- => 원자력안전법은 허가를,
방사능방재법은 허가받은 자의 물리적방호와 방사능방재를 규율하는 체계인데
서식은 그대로 인용한 결과로 보임

3. 교육기록과 개인정보

방호방재분야

◆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

제11조(기록 및 비치)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
◆ 방사능방재 교육에 관한 규정

제15조(기록 및 비치)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
- ◆ 교육이수자의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?

3. 교육기록과 개인정보

원자력안전분야

◆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

제11조(기록 및 비치) 교육주관기관은 통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**5년 이상** 보존하여야 한다.

◆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

제9조(기록 및 비치)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교육·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**5년간** 보존하여야 한다.

- ◆ 교육이수자의 성명,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?

3. 교육기록과 개인정보

원자력안전법 교육의무 위반과 과태료

제106조(교육훈련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

제1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...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

8.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
3. 교육기록과 개인정보

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19조(과태료 부과에의 제척기간)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3. 교육기록과 개인정보

방사능방재법

제9조의2(물리적방호 교육)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(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검사 등)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6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

제5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1. 제9조제1항 단서,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2.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

- ◆ 방사능방재법상 교육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검사에서 시정을 명함
- ◆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시행

4. 결론

- 원자력안전법에서는
 - ✓ 허가단계에서 결격사유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
 - ✓ 교육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5년간 기록 보존 필요
- 방사능방재법에서는
 - ✓ 이미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음
 - ✓ 교육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음

감사합니다